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구

내 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포획도구·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포획허가 시 수렵인은 수렵면허 및 수렵보험을 소지한 지역의 모범 수렵인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 함)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포획허가를 받은 자

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환경부 2016. 6. 20.)」에 따르면 포획기간에 있어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은 2개월 이내로 하고 포획지역은 조류(새) 및 수류(짐승)인 경우에는 피해 지역 리·동 단위로 포획허가를 하여야 하며, 허가 시 포획허가 동물의 수량만큼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배부하고 ‘유해야생동물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1. 광주광역시 동구(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관리 부적정)

가.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미발급 및 관리대장 미작성

광주광역시 동구 ○○○○과는 아래 [표1]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였으므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를 위한 ‘확인표지 발급’, ‘포획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발급수량과 배부수량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4년 46명, 2015년 65명, 2016년 47명, 2017년 81명 등 총 239명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였음에도,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지 않았고, 포획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1] 포획허가 관련 표지발급 및 관리대장 현황

연도별	허가인원 (명)	포획허가계획 관련(매)			관리대장 관리	
		확인표지발급수량	확인표지배부수량	확인표지반납수량	관리대장	기재여부
2014	56	미발급	미배부	-	×	×
2015	65	미발급	미배부	-	×	×

연도별	허가인원 (명)	포획허가계획 관련(매)			관리대장 관리	
		확인표지발급수량	확인표지배부수량	확인표지반납수량	관리대장	기재여부
2016	47	미발급	미배부	-	×	×
2017.7.31.	81	미발급	미배부	-	×	×

※ 광주광역시 동구 제출자료 재구성

나. 수렵보험 미 가입기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신청한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포획허가 대상사업 중 2014년 3명, 2015년 4명, 2016년 2명 등 총 9명이 552일 동안 수렵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포획을 부당하게 허가하였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관리 부적정)

가.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미발급 및 관리대장 미작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였으므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를 위한 ‘포획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발급수량과 배부수량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4년 171명, 2015년 115명, 2016년 165명 등 총 451명에 대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였음에도,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지 않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지 않는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나. 수렵보험 미 가입기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신청한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포획허가 대상사업 중 2014년 9명, 2015년 1명 등 총 10명이 1,437일 동안 수렵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포획을 부당하게 허가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광산구청장은

[주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에는 확인표지 발급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